

□ 한국방송학회 회원관련 정관

제6조(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

1. 정규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방송학 또는 인접분야의 교육에 종사하는 전임교원
2. 방송학 또는 인접분야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1호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3. 방송학 또는 인접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4. 방송학 또는 인접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방송 또는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했거나 방송학 관련 연구·교육·학술 분야의 실적이 뛰어난 사람
5. 준회원으로 5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7조(공로회원)

만 65세 이상의 학회의 정회원으로 1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

제8조(준회원)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방송학 또는 인접분야의 석·박사 과정에 있거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방송 또는 관련 분야 현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은 입회금, 회비납부 등 이 규약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선거권은 정회원 승인을 받은 다음 해부터 행사할 수 있다.
- ② 준회원과 단체회원,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③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회비납부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 ④ 공로회원은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
- ⑤ 회원은 연구·교육·사회참여 활동 등을 함에 있어서 학회가 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윤리적 행위의 원칙과 기준 등에 관한 윤리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2조(회원의 탈퇴 및 회원자격 상실)

- ① 학회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 ② 학회의 준회원이 재학 중인 대학원에서 제적되었을 때에는 준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③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3회 이상 회비를 체납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1차 이사회 의결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단, 외국 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본 학회에 재가입하고자 할 경우, 신입회원 입회 절차에 따라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단,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 확정 전에 회원 자격을 회복할 경우 당해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 정관 발췌